

## 전자여행허가(K-ETA) 이용자 편의성 개선

- 전자여행허가 유효기간 확대(2년 → 3년)
- 청소년(17세 이하)과 고령자(65세 이상)는 전자여행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

□ 법무부는 무사증입국 가능 국가 국적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전자여행허가(K-ETA)\*의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, 오는 7월 3일(월)부터 △ 전자여행허가의 유효기간을 확대(2년 → 3년)하고 △ 청소년(17세 이하)과 고령자(65세 이상)는 전자여행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.

\* 무사증입국 가능 국가(112개)의 국적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현지 출발 전에 전자여행허가(K-ETA)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고 허가를 받는 제도 (유효기간 내에서 국내입국 횟수 제한 없이 사용 가능)

- 전자여행허가 유효기간 확대는 시행일 이후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하는 대상자부터 적용됩니다.
- 전자여행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청소년(17세 이하)과 고령자(65세 이상)는 사전에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입국이 허용되나, 입국 신고서 작성 생략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전자여행허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.

□ 금번 조치로, 외국인이 한번 전자여행허가를 받으면 더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게 되고, 특히 청소년, 고령자들은 전자여행허가 없이도 입국이 가능해지므로 이들을 동반한 가족여행객 등의 입국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□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동안 전자여행허가 다국어 지원 서비스를 한국어, 영어 2개 언어에서 일본어 등 6개 언어\*를 추가하고, 단체신청 가능 인원도 30명에서 50명으로 늘리는 등 전자여행허가 이용자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.

\* 일본어, 태국어, 중국어(번체), 스페인어, 프랑스어, 말레이어

□ 법무부는 앞으로도 전자여행허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전자여행허가가 외국인의 입국편의 증진 및 안전한 국경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	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	책임자	과 장	박제성 (02-2110-4035)
		담당자	사무관	김영오 (02-2110-4045)

